

의식의 인과적 기능*

김기현 (서울대)

주제 심리철학

주요어 의식, 인과적 기능, 데이빗슨, 김재권, 무법칙적 일원론, 인과적 배제

요약문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과 정신과 물질의 인과가 물리계의 폐쇄성과 결합할 때 긴장을 산출한다.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행위의 인과적 과정이 물리계 내에서 완결(물리적 폐쇄성)될 수 있다면, 또는 모든 행위의 설명이 순수히 물리적 차원에서 결정론적인 법칙에 의하여 완결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면, 도대체 물리적 상태와 구별되는 정신적 상태(이원론)가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행동의 인과적 과정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다는 말인가? 데이빗슨과 김재권은 이러한 맥락에서 정신 인과의 문제를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하면서, 포더가 부수공포증epiphobia이라고 부르는 증후군을 현대 심리철학에 확산시킨다. 이 글은 두 철학자에 의하여 분석된 증후군을 진단하고, 이에 대하여 다른 철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된 처방을 평가하고자 한다.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되는 처방은 정신적 사건과 행위 사이의 인과를 반사실적 가정문을 통하여 이해함으로써 정신 인과를 구제하려는 시도다. 이 처방은 많은 철학자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 처방이 데이빗슨의 진단과 김재권의 진단 모두에 대하여 약효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글은 이 처방이 양자 모두에 대하여 약효가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정신 인과의 문제는 반사실적 가정문을 통한 인과의 이해라는 단순한 처방에 의하여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증상임이 드러날 것이다.

* 이 논문은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 1998-001-B00280)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면 물질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많은 특성들이 매우 친근하게 나타난다. 음악회에서의 소프라노의 아름다운 음색은 나의 감각을 채색하면서 나에게 감동을 준다. 산길을 걷다 펼쳐지는 초록의 물결은 나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 이런 마음의 특질들은 물질의 관점에서는 신비로운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과거의 철학자들과 오늘의 철학자들은 마음은 물질과 같은 것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여러 정신적인 성질들을 담지하는 하나의 실체로서의 영혼과 같은 별도의 정신의 영역을 가정하기도 하고, 물체이외의 별도의 실체로서의 정신 영역을 부정하여 모든 존재자는 물질적 존재자라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들 물질적 존재자들은 물질적 성질 뿐 아니라 그와 다른 별도의 정신적 성질 또한 갖는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는 일부 철학자들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일상인들의 상식을 지배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의 상식에는 위의 이원론적 사고 이상으로 강한 또 하나의 직관이 자리잡고 있다. 마음의 영역과 물질의 영역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각이다. 나의 많은 감각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다. 내 앞에 있는 장미가 냇다라는 나의 판단은 외부의 물리적 사건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심적인 사건이다. 장미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그 장미에서 반사되어 나의 망막을 자극하는 빛의 작용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음과 물질의 인과적 작용은 물질에서 마음으로 진행될 뿐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내가 지금 손을 들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면, 이 의지는 나의 신경과 근육에 자극을 가하여 내 손이 올라가게 한다. 의지는 분명히 심적인 사건이며 손이 올라가는 일은 물리적 사건이다. 인과관계가 마음에서 물질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과 물질 사이의 인과 관계는 그 자체로 의심하기 어려운 현상일 뿐 아니라, 이를 의심할 경우에는 주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과를 낳는다. 정신 현상이 행위로서의 물질적 과정에 인과적 작용을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동과 행동을 통한 외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사건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며, 이는 행위의 주체자로서의 인간의 지위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다. 이렇듯 정신과 물질의 인과 관계는 우리의 자아 개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세계관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위의 두 관점-이원론과 정신과 물질의 인과-은 그 자체로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나,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제 3의 관점과 결합할 때 긴박한 긴장을 조성한다. 이 제 3의 관점이란 모든 물질적 사건에 대한 인과적 설명은 물질계 내에서 완전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견해다. 이러한 생각은 물리학이 자족적인 학문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손을 들겠다는 나의 의지가 인과적 과정을 거쳐 손이 올라가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자. 정신적인 사건으로서의 손을 들겠다는 의지는 두뇌의 어떤 상태와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 어떤 이는 이 두뇌 상태가 정신적 상태를 야기한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실현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들의 관계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는 현재의 논의를 위하여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행동을 야기한 인과적 원천을 추적하는 과정이 반드시 정신적 사건에까지 이를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든 인과하는 것이든 간에 그 토대가 되는 두뇌의 상태만을 언급함으로써 행동에 관한 인과적 설명이 완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보트가 일정한 방식으로 움직인 원인을 그 프로그램이 운용된 방식만을 언급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듯이, 인간의 행동도 두뇌의 구조와 그를 지배하는 생리적 체계만을 언급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으며, 행동의 인과적 설명에 정신적 특성의 언급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자체로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입장으로 보이며, 현대의 심리철학자는 이러한 생각을 물리계의 폐쇄성Physical Closure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이제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과 정신과 물질의 인과가 물리계의 폐쇄성과 결합할 때 긴장을 산출함을 쉽게 볼 수 있다.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행위의 인과적 과정이 물리계 내에서 완결(물리적 폐쇄성)될 수 있다면, 또는 모든 행위의 설명이 순수히 물리적 차원에서 결정론적인 법칙에 의하여 완결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면, 도대체 물리적 상태와 구별되는 정신적 상태(이원론)가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행동의 인과적 과정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다는 말인가? 데이빗슨과 김재권은 이러한 맥락에서 정신 인과의 문제를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하면서, 포터가 부수공포증epiphobia이라고 부르는 증후군을 현대 심리철학에 확산시킨다. 이 글은 두 철학자에 의하여 분석된 증후군을 진단하고, 이에 대하여 다른 철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된 처방을 평가하고자 한다.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되는 처방은 정신적 사건과 행위 사이의 인과를 반사실적 가정문을 통하여 이해함으로써 정신 인과를 구제하려는 시도다. 이 처방은 많은 철학자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 처방이 데이빗슨의 진단과 김재권의 진단 모두에 대하여 약효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글은 이 처방이 양자 모두에 대하여 약효가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정신 인과의 문제는 반사실적 가정문을 통한 인과의 이해라는 단순한 처방에 의하여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증상임이 드러날 것이다.

정신과 물질의 인과, 이원론, 물리계의 폐쇄성 사이의 긴장에 대한 기술은 다소 인상주의적이다. 그러나, 이 정도만으로도 현대적 이원론의 원류를 이루는 데카르트를 괴롭혔으며 현대의 이원론자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문제의 기본 동력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문제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위하여는 인상주의적 접근을 넘어서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후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러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리철학사 내에서의 문제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는 위의 문제가 갖는 철학사적인 무게를 이해하게 하여줄 뿐 아니라, 현대 심리철학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정확한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소위 데카르트의 보복

철학에서 다루어지는 마음과 몸의 관계 문제는 지금까지도 데카르트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 의식의 틀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데카르트는 사유를 본질로 하는 마음과 연장성을 본질로 하는 물체는 별도의 두 실체를 구성한다고 믿었다. 인간은 신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지며, 영혼은 기쁨, 슬픔, 의지, 믿음 등의 모든 정신적 상태 또는 성질들을 담지하는 실체이며, 신체는 크고, 작음, 찢어짐 등의 물리적 성질을 담지하는 별도의 실체를 이룬다. 이러한 의미에서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실체 이원론이라 불리운다. 이런 데카르트를 가장 괴롭힌 문제는 전혀 다른 실체에 속한 두 성질이 어떻게 인과적 작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의지는 영혼이라는 실체에 속한 연장성이 없는 사건인데, 이러한 사건이 전혀 다른 실체에 속한 인간의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데카르트는 정신과 신체의 인과 관계를 부정할 수 없었기에 신체의 사건이 미세하게 산화되면서 정신적인 것으로 변환되고, 정신의 사건이 응집되면서 연장성이 있는 물질로 변환되는 영역을 상정하게 되었고, 우리 두뇌의 송과선이 그 영역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이후의 철학자들에 의하여 근거 없는 추정으로 비판되었고, 정신 인과의 문제가 결국은 데카르트의 심리철학을 좌초시키는 이유가 되었다.

데카르트 철학의 근본 문제는 정신과 물질의 두 영역을 구분한 데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전혀 다른 두 실체의 존재 영역을 가정할 때 양자가 어떻게 인과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실체의 두 영역을 가정하지 않은 채로 이원론을 유지하게 되면, 즉 물질적인 실체만을 받아들인 채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을 고수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는 데카르트를 괴롭힌 정신과 물질의 인과의 문제를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현대적 형태의 이원론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를 우선 살펴보자.

데카르트 이후의 현대적 형태의 이원론은 실체 이원론이 아니라 속성 이원론의 형태로 나타난다. 현대의 이원론자는 정신적 실체가 물리적 실체와 별개로 존재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에 따르면, 모든 개별적 대상은 물리적 대상이다. 책상이 대상으로 존재하고, 바위가 대상으로 존재하듯이 철수도 하나의 물리적 대상으로 존재한다. 물리적 대상과 구분되는 영혼, 귀신 등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책상은 일정한 크기, 무게, 길이 등의 물리적 속성들만을 갖는 반면, 철수는 그러한 물리적 속성과 아울러 사고, 감정, 의지 등의 정신적 속성 역시 갖는다는 점에서 책상과 다르다. 정신의 영역은 물리적 대상과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대상에 속하는 속성으로서만 존재하게 된다.

정신적 속성을 물리적 실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정신적 속성을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현대적 입장은 대체로 두 경향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1960~70년대를 기점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기능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잭슨Frank Jackson¹⁾과 차머스David Chalmers에 의하여 대변되는 의식 이원론자들의 입장이다. 기능주의자들은 한 두뇌 상태가 일정한 정신적 속성을 갖는 이유는 그러한 정신적 속성을 특징지우는 기능을 자신이 속한 체계 내에서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정신적 속성의 본질은 인과적 기능에 있으며, 한 물리적 상태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정신적 속성을 실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정신적 속성의 복수실현 가능성에 함축한다는 것 또한 잘 알려져 있다. 정신적 속성의 특징을 규정하는 인과적 기능은 다양한 물질적 소재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으며, 따라서 여러 상이한 유형의 물리적 상태들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한 모두 그러한 정신적 속성을 실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신적 속성은 기능으로 대변되는 이차적 성질로 정의되고, 따라서 특정한 물리적 소재로 환원될 수 없다는

1) Frank Jackson (1986, 1997), Chalmers (1996).

결론이 따른다. 한편 기능주의자들은 정신적 속성을 특징지우는 인과적 속성은 물리적 상태에 의하여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특정한 물리적 상태만이 정신적 속성을 규정하는 인과적 상태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 상태들만이 그러한 인과적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능주의는 물리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기능주의를 묘사하면서 이원론이라는 표현보다는 비환원적 물리주의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의식 현상은 기능주의의 초기에서부터 문제로 등장한다. 정신 현상에 대한 어떠한 기능적 서술이 주어지든, 그러한 기술을 만족하면서도 정신 현상과 연관된 감각질이 결여될 수 있다든가, 또는 연관된 감각질이 전도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²⁾ 이 반론의 요지는 우리의 정신적 상태들에는 기능적 특성을 본질로 갖는 측면과 기능적 특성에 의하여 포착되지 않는 측면을 함께 갖고 있는데, 기능주의는 단지 부분에 불과한 기능적 특성을 정신적 상태의 모든 측면을 포섭하는 특성으로 일반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통과 같은 심리 상태에는 신음을 야기 한다든가, 신체 섬유 손상에 의하여 야기된다 등의 기능적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뿐 아니라 고통에 고유한 느낌에 해당하는 감각질의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감각질의 측면은 기능적 특성에 의하여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찰을 세련화하면서, 잭슨과 차머스는 의식의 성질은 개별적인 물리적 상태로도, 물리적 상태들에 의하여 실현되는 이차적 성질로서의 기능적 성질로도 환원될 수 없는 별개의 성질임을 주장한다.

현대적 형태의 비환원주의인 기능주의와 의식 이원론은 모두 정신적 속성이 그가 속한 체계의 특정한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의견을 공유한다. 기능주의는 비환원의 근거를 정신적 속성의 본질이 이차적 성질인 기능적 성질에 있음에서 찾고 있으며, 의식 이원론은 비록 정

2) Ned Block (1980).

신적 속성의 다른 측면들이 기능적 속성에 의하여 포착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의식적 속성은 기능적 속성에 의하여서도 포착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이제 정신의 영역을 실체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속성의 차원에서 물질의 영역으로부터 구분하는 현대적인 이원론은 데카르트를 괴롭힌 정신 인과의 문제와 관련하여 더 넓은 상태에 있는가? 데이빗슨의 철학과 김재권의 철학은 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이들이 옳다면, 데카르트는 자신을 버린 자들을 바로 자신을 버린 이유를 통하여 보복하고 있는 셈이다.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

정신적 속성이 물리적 속성과 다를 경우에 정신적 속성이 인과적으로 무력할 수 있다는 문제, 즉 정신적 속성의 부수현상론을 현대 심리철학의 핵심적 문제로 부각시킨 철학자는 데이빗슨이다.³⁾ 사실 이러한 상황에는 다소의 아이러니가 있다. 데이빗슨 자신은 무법칙적 일원론을 통하여 정신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였는데, 많은 심리철학자들은 무법칙적 일원론이 오히려 정신으로부터 인과적 힘을 빼앗는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빗슨의 주장은 무엇이고, 그의 주장이 정신의 부수현상론을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데이빗슨은 다음의 세 원리를 받아들인다.

1. 인과적 상호관계의 원리: 물리적 사건과 인과적으로 관계를 맺는 정신적 사건들이 있다.
2. 인과의 합법칙성 특성의 원리: 인과가 있는 곳에 법칙이 반드시 있다. 원인과 결과로 연결된 사건들은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에 포섭된다.

3) Davidson (1970).

3. 심적 무법칙성: 정신적 사건들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기반이 되는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은 없다.

이 원리들은 상당한 긴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3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엄밀한 법칙이 없을 뿐 아니라, 물리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을 이어주는 엄밀한 법칙도 있을 수 없다. 둘 중의 한 유형의 엄밀한 법칙이 있다면, 선행하는 정신적 사건으로부터 또는 선행하는 물리적 사건으로부터 엄밀한 법칙에 따라 정신적 사건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로부터는 대우에 의하여 엄밀한 법칙이 없으면 인과도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와 3으로부터 정신적인 것과 관련된 인과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따르는 것처럼 보이며, 이 결론은 1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빗슨은 법칙을 사건 유형에 귀속시키고 인과 관계를 개별자들에 귀속시킴으로써, 이러한 외관상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그에 따르면,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법칙에 의하여 포착하는 시도는 기본적으로 유형화를 포함하기 마련이다. 즉, 앞서의 사건을 A 유형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뒤의 사건을 B 유형의 사건으로 이해하여야만, 이를 근거로 하여 두 사건을 법칙을 통하여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적 무법칙성의 원리는 두 사건을 물리적 용어로 유형화하였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가 엄밀한 법칙으로 포착될 수 있지만, 심적인 용어로 유형화되었을 때에는 엄밀한 법칙을 통하여 포착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셈이 된다. 예를 들어, 나에게 발생한 특정한 고통의 경우를 보자. 이 사건은 C 섬유가 활성화된 특정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나에게 있어 얼굴을 찡그린 특정한 사건을 야기한다. 데이빗슨의 주장은 얼굴을 찡그린 사건을 야기한 선행 조건을 심적인 유형의 사례로 포착하면, 즉 고통으로 서술하면 이 유형의 사건과 얼굴을 찡그리는 유형의 사건 사이를 이어주는 엄밀한 법칙이 구성될 수 없는 반면, 선행 사건을 C 섬유 활성으로 유형화하면 이 유형의 사건과 얼굴 찡그림이라는 유형의 사건

을 이어주는 엄밀한 법칙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빗슨은 하나의 사건이 정신적 사건으로 유형화될 수도, 물리적 사건으로 유형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엄밀한 법칙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봄으로써, 1과 2를 조화시키려 한다. 모든 정신적 사건은 그 개별성의 차원에서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파란색 원의 경우를 보자. 비록 파람이라는 성질과 원임이라는 성질이 다르다 할지라도, 파람이 예화된 이 사건과 원임이 예화된 이 사건은 개별자의 차원에서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고통임이라는 성질과 C 섬유 활성임이라는 성질은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고통이 예화된 이 사건과 C 섬유 활성이 예화된 이 사건은 개별성의 차원에서 동일하다. 이렇게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을 개별성의 차원에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면, 1과 2를 조화하는 방법이 쉽게 마련되는 듯하다. 한 사건을 C 섬유 활성의 사례로 간주함으로써 이 사건과 얼굴 찡그림 사이의 관계를 엄밀한 법칙에 포섭시켜 양자 사이의 인과 관계를 확보하고(2의 만족), 다음에 앞서의 사건이 사례의 차원에서 고통의 사례와 동일하므로 고통의 사건이 얼굴 찡그림의 사건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1의 만족).

데이빗슨이 위와 같은 논증을 통하여 정신 인과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논증이 오히려 정신의 인과적 무력성을 보인다고 해석한다. 다음의 예는 그들의 해석을 이해하는데에 유용하다. 소프라노가 푸치니의 오페라 중의 한 아리아를 극도의 고음으로 노래하는 중에 그 노래에 의하여 창문이 깨졌다고 하자.⁴⁾ 소프라노의 고음의 노래와 창문의 깨짐 사이에는 분명히 인과적 관계가 있다. 이때 그 고음의 노래는 일정한 정신적 내용을 가진 사건인 동시에 높은 주파수를 가진 물리적 사건이기도 하다. 이들의 해석에 따르면, 데이빗슨은 앞 사건을 일정한 주파수를 가진 물리적 사건으로 기술할 경우에 이 사건과 창문의 깨짐은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포섭될 수 있으며,

4) 이 예는 Dretske (1989)에서 빌려 온 것이다.

따라서 양자는 인과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 (2에 의하여) 그리고, 데이빗슨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앞의 사건은 일정한 내용을 가진 노래이기도 하므로, 일정한 정신적 내용을 가진 사건과 창문의 깨짐 사이의 관계도 인과 관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3과의 조화) 그러나 데이빗슨의 논증이 정신과 물질 사이의 인과를 구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논증은 정신과 물질 사이의 인과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신과 물질 사이의 인과 문제의 본질은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을 동시에 예화하고 있는 한 사건이 물리적 사건을 야기하였을 경우에, 그 인과 관계가 앞 사건이 갖고 있는 정신적 속성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그 사건이 갖고 있는 물리적 속성 때문인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인과 관계가 정신적 속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에서만 정신과 물질 사이의 인과 관계가 구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의 예에서 소프라노의 노래는 정신적 속성으로서의 가사의 내용과 물리적 속성으로서의 주파수를 동시에 예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어떤 속성이 창문을 깨트리는 과정에 인과적으로 개입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신과 물질의 인과 관계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원하는 대답은 이 과정에 정신적 속성이 인과적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소프라노의 노래가 바로 그러한 내용을 가졌기 때문에 창문이 깨졌다라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높은 주파수를 가진 사건이 일정한 정신적 내용을 가진 사건이고, 이 사건이 창문을 깨트리는 데에 인과적 기여를 하였으므로 정신적 내용을 가진 사건이 인과적 힘을 갖고 있다고 대답하는 것은 이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⁵⁾

위의 논의는 정신의 인과적 효력의 문제는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효력

5) 이는 마치 파란색의 둥근 원이 굴러가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파란 사건과 이 둥근 사건이 동일하므로 사람이 굴러감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다음의 논문들은 위와 같은 논지를 한 목소리로 제시하고 있다:Sosa (1984), Dretske (1989), Jaegwon Kim (1984), Horgan (1989).

의 문제이며, 다만 정신적 사건의 인과적 효력을 보여주는 데이빗슨의 논증은 필요한 의미에서의 정신의 인과적 효력을 구제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데이빗슨의 비판자들은 데이빗슨의 논증이 정신의 인과적 효력을 보여주지 못할 뿐 아니라, 정신의 인과적 효력을 부정하는 데에까지 나아간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저변에는 “원인과 결과로 연결된 사건들은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에 속한다”는 인과의 합법칙성 특성의 원리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 놓여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의 원리는 엄밀한 법칙만이 인과적 관계의 토대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엄밀한 법칙에 나타나는 속성들만이 인과적 효력을 인정 받는다는 주장을 포함한다. 데이빗슨의 원리가 이렇게 해석되면, 이는 “정신적 사건들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기반이 되는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은 없다”는 심적 무법칙성 원리와 결합하여 정신 속성의 인과적 무력성을 바로 합축하게 된다. 정신적 속성은 엄밀한 법칙에 포섭될 수 없고, 엄밀한 법칙에 포섭되는 속성만이 인과 관계의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정신적 속성은 인과 관계의 토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의 원리가 위와 같이 강하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맥로프린은 이러한 해석에 반대하면서 다음의 두 주장을 구분한다.

1. 모든 인과적 성질들은 필연적으로 엄밀하게 법칙적이다.
2. 오직 엄밀하게 합법칙적인 성질들만이 인과적이다.

1은 인과 관계에 들어오는 모든 사건들이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기술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2는 엄밀한 법칙에서 언급되는 속성들만이 인과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맥로프린에 따르면, 데이빗슨의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의 원리는 전자를 합축하지만, 후자의 주장을 합축하지 않는다. “인과 관계에 있는 사건들 사이에는 반드시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엄밀한 법칙이 있다”는 데이빗슨의 주장은 “두

사건을 물리적 사건으로 기술할 경우에 그 사건과 그에 의하여 야기되는 물리적 사건 사이의 관계가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포섭된다”는 것을 말할 뿐이며, 두 사건 사이의 인과 관계의 토대를 제공하는 성질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인과에 대한) 법칙 포섭적 견해는 어떤 유형의 반사실적 의존 관계가 개별적인 인과적 거래의 토대가 된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⁶⁾고 주장한다.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 사이의 인과 관계는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면”과 같은 조건이 첨가된 엄밀하지 않은 느슨한 법칙(hedged laws)에 의하여 토대가 마련될 수도 있고⁷⁾, “정신적 성질이 없었더라면, 물리적 속성도 없었을 것이다”와 같은 반사실적 가정문을 통하여 그 인과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으며⁸⁾, 이런 가능성을 데이빗슨의 견해가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데이빗슨은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필연적으로(물리적 기술을 통하여 제시되었을 때)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포섭되어야 한다는 것만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데이빗슨에 대한 해석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이 해석은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의 원리와 심적 무법칙성의 원리가 갖는 직관적 호소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정신 인과를 단지 개별자로서의 정신적 사건과 개별자로서의 물리적 사건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서 정신적 속성에 의거한 인과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다.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의 원리를 새로이 해석하여 정신적 속성을 그 인과적 효력이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토대지워져야 한다는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켰고, 따라서 제 3의 방식, 제 4의 방식에 의하여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효력을 토대지우는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맥로폴린은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효력을 물리적 속성과의 반사실적 의존 관계에 의하여 토대지워진다는 입장을 옹호한다. 그리고, 데이빗슨 자신도 그러한

6) McLaughlin (1989), 127.

7) Fodor (1989) McLaughlin (1989).

8) LePore and Loewer (1987), Horgan (1989).

입장에 동조적인 방향으로 기운다.⁹⁾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외관상으로 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빗슨의 이론을 딜렘마에 빠지게 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의 원리를 위와 같이 약하게 해석하고, 이 해석을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효력이 물리적 속성과의 반사실적 의존 관계를 통하여 토대가 놓아진다는 견해와 결합시켜 보자. 그리고, 이들이 정신적 사건이 행동을 야기한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진단을 내리게 되는가를 보자. 선행하는 사건을 A라고 하고, 뒤따르는 행동을 B라고 하자. A는 정신적 속성 M을 예화함과 동시에 물리적 속성 P를 예화한 사건이다. (예를 들어, A는 C 섬유 활성을 예화한 사건임과 동시에 고통을 예화한 사건이다.) 인과의 토대를 반사실적 의존 관계로 이해하는 위 입장에 따르면, A가 B(예를 들어, 얼굴 찡그림)을 야기한 근거는 “M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B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M 속성과 B 속성 사이의 반사실적 의존 관계에 있다. 한편, 앞서의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에 대한 앞서의 해석은 이 경우에 대하여 P 유형의 사건과 B 유형의 사건 사이에 결정론적이고 엄밀한 법칙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함축한다. 그런데, M은 여러 상이한 물리적 토대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다는 입장은 맥로프린과 현재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정이다. 그렇다면, M이 P가 아닌 다른 물리적 속성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여야 한다. 즉, P'이 M을 실현한 경우에도, 이 사건이 B를 야기한 토대는 M과 B 사이의 반사실적 의존 관계에 있으며, 동시에 P'과 B 사이에는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맥로프린의 입장은 다음의 두 주장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한다.

1. M 사건이 B 사건을 야기한 토대는 M과 B 사이의 반사실적 의존 관계다.

9) Davidson (1993).

2. M을 실현하는 물리적 속성들 P1, P2, ... Pn에 있어서, Pi와 B 사이에 엄밀한 법칙이 성립한다.

이 경우에 대하여 우리가 갖는 의문은 도대체 왜 반사실적 의존 관계를 통하여 맺어진 인과 관계가 동시에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포섭되기도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는 설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범위한 일치를 설명되지 않는 우연으로 남겨두는 이론은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회의의 눈길을 받아 마땅할 뿐 아니라, 이러한 우연을 가정하는 것은 “인과가 있는 곳에 엄밀한 법칙이 반드시 있다”는 데이빗슨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 여기서의 ‘반드시’는 필연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의 일치를 우연의 일치로 보는 것이 배제된다.

“인과가 있는 곳에 반드시 엄밀한 법칙이 있다”는 데이빗슨의 원리를 인과가 적용되는 사건들의 외연을 제약하는 원리로 해석하면 위와 같은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왜 모든 인과 관계를 맺는 사건들이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포섭되는가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그 뿐 아니라, 이러한 입장은 모든 인과 관계를 온전히 엄밀한 물리적 법칙에 의하여 포섭되는 범위 안에 제한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물리계의 폐쇄성과도 부합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다시 부수현상론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왜 인과 관계의 외연이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포섭되는 범위 내에 제한되는가의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제시될 수 있는 납득할만한 대답은 바로 엄밀한 법칙에 나타나는 물리적 성질이 인과의 유일한 토대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개념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보자. 한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 사이의 인과 관계가 반사실적 의존 관계에 설명되지만, 앞의 정신적 사건을 물리적 사건으로 기술할 경우에 이 사건과 결과로서의 물리적 사건 사이의 관계가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포섭되지 않는다고 하자. 다시 말하면,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엄밀한 법칙에 포섭될 수 있게 하는 앞 사건의 물리적 서술이 없다고 하자.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의 원리는 이 경우에 두 사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

하여서는 안 됨을 주장한다. 엄밀한 법칙에 나타나는 성질들이 인과적 효력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주장이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의 원리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반사실적 의존 관계에 의한 인과의 분석에 인과의 합법칙적 원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아도 드러난다. 반사실적 의존 관계의 단순한 형태가 인과 관계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되지 않음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공통 원인에 의한 두 결과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서도 반사실적 의존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어 놓아도 반사실적 의존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들의 경우를 제외하기 위하여 앞의 단순한 형태의 반사실적 의존관계는 인과 분석을 위하여 세련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의 원리는,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분석이 어떻게 세련화되는 간에, 그것의 외연은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설명되는 범주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개념적 차원에서 반사실적 의존 관계에 의하여 포섭되는 관계와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포섭되는 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때, 엄밀한 법칙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반사실적 의존 관계를 통한 인과 관계의 분석이 궁극적으로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규정되는 범위에 의하여 제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우선성을 설명하는 적절한 방법은 인과 자체가 엄밀한 법칙에 나타나는 성질들에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의 고찰은 맥로플린의 해석이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봉착함을 보여준다: 반사실적 의존 관계를 통하여 토대지워진 정신적 속성의 인과 관계가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포섭되는 관계와 그 외연이 우연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면,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효력의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는 데이빗슨의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의 명제 자체와 어울리지 않으며, 물리계의 폐쇄성을 위배하고, 또한 포괄적 우연의 가정은 방법론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수많은 문제점을 안는다. 한편, 인과의 합법칙성의 원리를 인과 관계를 부여할 수 있는 외연을 필연적으로 제한

하는 원리로 보면, 위와 같은 문제들을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반사 실적 의존 관계를 통하여 정신적 속성이 갖는 인과적 효력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주목할 점은 위의 논의는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효력을 그를 구현하는 물리적 속성이 갖는 것 이외에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사 실적 의존 관계든 다른 관계(예를 들어, 포더의 느슨한 법칙)든 그것이 엄밀한 법칙에서 제시되는 관계와 다른 것이라면 (사실 정신적 속성의 복수실현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비환원주의가 정신적 속성이 인과적 독자성을 갖는다고 주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과의 토대가 되는 관계가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포섭되는 관계와 다르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초된 인과 관계가 왜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포섭되는 관계와 외연이 일치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일단 이 문제가 제기되면 그 입장은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빗슨의 인과의 합법 칙적 특성의 원리와 심적 무법칙성을 받아들이면서 정신적 속성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어 보이며, 따라서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의 원리를 맥로플린과 같이 약하게 해석하여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독자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는 원리를 표현한 명제의 논리적 조작 이상의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

〈김재권의 배제 원리〉

김재권은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효력에 관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던진다. 그의 논의는 상이한 해석의 여지없이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효력을 정면으로 문제 삼는다. 데이빗슨에 대한 맥로플린의 해석을 받아들여, 포더가 생각하는 느슨한 법칙 또는 르포어와 로우어가 생각하는 반사실적 가정문을 토대로 하여 정신적 속성이 인과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고 하자. 과연 이러한 입장이 유지될 수 있는가? 이 입장에 대한 김재권의 공격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다음과 같은 원리다.

물리적 인과 폐쇄성의 원리: 어떠한 물리적 사건을 선택하여 그것의 선행 원인을 추적하여도, 그 과정은 물리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 원리의 요지는 물리적 사건에 대한 인과 과정, 또는 인과적 설명은 물리계 내에서 물리적 법칙에 의하여 완결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강한 직관적 설득력을 갖고 있으며,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원리로 보인다.¹⁰⁾ 김재권은 이 원리가 정신적 속성이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하여 긴박한 긴장을 조성한다고 생각한다. 통증이 얼굴 찡그림을 야기한다고 간주되는 경우를 보자. 오늘날 비환원주의자들은 정신적 속성이 물리적 속성에 수반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즉, 만약 어떤 것이 M이라는 정신적 속성(예를 들어, 통증)을 t라는 시간에 예회한다면, 다음과 같은 어떤 물리적 속성 P(예를 들어, C 섬유 활성)가 있다: 그것은 t라는 시간에 P를 갖고 있으며, 한 시점에 P를 갖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시점에 M을 갖는다.¹¹⁾ 수반 원리의 요지는 정신적 속성은 어떤 물리적 속성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실현되며, 따라서 정신적 속성이 물리계에 닻을 내리지 않고 자유롭게 떠다니는 경우란 없다는 요지를 갖는다.¹²⁾ 이제 이러한 수반의 상황에서 정신적 사건에서 물질적 사건으로 이어지는 인과의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자. 통증을 갖는 사건은 C 섬유 활성을 갖는 사건에 수반한다. 통증을 갖는 사건이 얼굴 찡그림의 사건을 야기한다고 하자. 인과 폐쇄성의 원리에 따르면, 얼굴 찡그림이라는 물리적 사건은 선행하는 물리적 사건에 의하여 완결적으로 야기된다. 그 선행하는 물리적 사건은 C 섬유 활성의 사건일

10) 이러한 물리적 폐쇄성의 원리는 인과 관계의 외연을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된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의 원리와 다르지 않음은 자명하다.

11) 수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여기서의 필연성이 합법칙적 필연성nomological necessity으로, 또는 형이상학적 필연성metaphysical necessity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상이한 해석은 우리의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 그러나 수반이 환원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하자. 수반은 한 정신적 속성이 나타날 경우에 그를 실현하는 임의의 물리적 속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지, 반드시 특정한 물리적 속성만이 한 정신적 속성을 실현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것이다. 그렇다면, 주어진 얼굴 창그림의 사건은 C 섬유 활성이라는 사건을 충분한 원인으로 갖는 셈이 된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통증이라는 정신적 속성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추가적인 인과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신적 사건을 물리적 사건과 구별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경우에, 물리적 인과적 폐쇄성의 원리를 위배하지 않으면서 정신적 사건에 대하여 인과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김재권은 위의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인 대답을 함으로써 정신적 사건을 물리적 사건과 구별되는 것으로 보는 비환원주의의 입장은 정신에서 물질로 이어지는 인과를 구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과로서의 물리적 사건을 P^* , 그의 물리적 원인을 P, P에 수반하는 정신적 사건을 M이라 하자. 그는 우선 P와 M이 개별적으로는 P^* 를 위한 충분 원인이 되지 못 하지만 이들이 더불어 P^* 를 위한 충분 원인을 구성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음을 보인다. 이 주장은 M이 P^* 를 위한 필수적 원인임을 합축하며, 따라서 물리적 인과적 폐쇄성의 원리를 위배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김재권은 M에서 P^* 로 이어지는 인과를 인과적 중층 causal overdetermination으로 보는 입장을 고려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P와 M이 각기 P^* 를 위한 충분 조건이며, P^* 가 두개의 충분 원인에 의하여 중층으로 결정된다. 사실 이 입장은 정신적 사건을 물리적 사건과 구분되는 것으로 볼 경우에, 폐쇄성의 원리를 위배하지 않으면서 정신적 사건의 인과적 효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폐쇄성의 원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P^* 의 충분한 원인으로 P를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하므로, 이 상황에서 M의 P^* 에 대한 인과적 효력을 구제하는 방법은 M을 P에 덧붙여진 추가적 원인으로, 즉 P^* 의 중층 원인으로 가정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날 정신적 사건의 인과적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비환원주의자들은 이러한 선택지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으며¹³⁾, 이 선택지에 대한 김재권의 비판을 둘러싼 논의가 정신 인과와 관

13) LePore and Loewer (1993), Horgan (1989), Crisp and Warfield (2001), 이선형 (2001).

련된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면, 정신적 사건을 중층 원인으로 보는 입장에 대한 김재권의 비판을 살펴보기로 하자.

정신적 사건을 물리적 사건에 대한 중층 원인으로 보는 입장에 대한 김재권의 비판은 여러 갈래로 구성된다. 그리고, 아 각각의 비판에 대하여 김재권의 논적은 그럴듯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들이 개별적으로는 그럴듯한 대답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일 수 없음을 앞으로 보이고자 한다. 김재권의 비판은 각기 독립적인 비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갖고서 정신적 사건의 인과적 효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김재권의 비판이 이런 방식으로 해석되면, 그의 논적의 대응은 각각의 비판에 대하여 그때그때 대답하는 정도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전체적인 비판을 하나의 정합적인 틀 내에서 동시에 대답할 수 있는 한에서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정신적 사건의 인과적 효력을 중층 원인으로서 구제하려는 입장은 이러한 요구를 만족할 수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김재권은 우선 정신적 사건을 중층 원인으로 보는 입장은 모든 정신 인과를 중층 인과로 만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함축함을 지적한다.¹⁴⁾ 중층 인과의 전형적인 예는 두 개의 총알이 정확하게 동일한 시점에 심장을 관통하여 사망을 야기하는 경우와 같이 독립한 두 사건이 한 결과에 대한 충분한 원인이 되는 경우다. 정신 인과를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면, 심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을 야기하는 모든 경우가 항상 우연히 다른 독립적인 물리적 사건이 중층 원인으로 개입함을 받아들이는 셈이 된다. 이러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우연을 가정하는 것은 김재권이 지적하는 대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김재권의 비판은 독자적으로는 성공적일 수 없다. 정신 인과를 옹호하는 비활원주의자들은 두 개의 중층 원인으로서의 심리적 사건(M)과 물리적 사건(P)이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양자는 수반 관계를 통하여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14) Kim (1998), 44.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양자가 존재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P*를 위한 중층 원인으로 개입하는 것은 두 독립적 사건들이 우연적으로 중층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반을 받아들이는 비환원주의자들이 중층 원인으로 정신적 사건의 인과적 효력을 응호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우연을 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⁵⁾

정신적 사건을 물리적 사건에 수반적으로 의존한다고 보는 것은 정신 인과와 관련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우연의 가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신적 사건의 인과를 물리계 내에 포함함으로써 물리계의 폐쇄성을 만족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김재권은 이에 대하여 정신과 물질의 수반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¹⁶⁾ 김재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두 원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마도 하나가 다른 것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여 배제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사건이면서 각기 한 사건을 위한 충분한 원인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문제는 남는다 두개의 추정적인 원인들이 독립적인 사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⁷⁾

김재권은 정신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에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그 인과적 효력이 더욱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재권은 정신적 사건의 인과적 효력과 관련된 문제를 인과적 배제 원리를 통하여 제시하는데, 위와 같은 요지는 이 원리의 도식화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그는 인과적 배제 원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15) Block (forthcoming), LePore (forthcoming)

16) Kim (1998), 41.

17) Kim (1998), 53.

만약 사건 e 가 시간 t 에 충분한 원인 c 를 갖는다면, c 와 구별되는 어떤 사건도 (이것이 진정한 중층결정overdetermination의 경우가 아니라면) e 의 원인일 수 없다.

김재권은 두 개의 독립된 사건들이 한 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원인인 경우를 진정한 중층 결정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배제의 화살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는 물리계의 폐쇄성을 위반할 뿐 아니라, 정신 인과와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우연을 가정하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반면, 정신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에 의존하는 중층 원인일 경우에는 배제 원리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도대체 배제 원리가 어떤 자격으로 물리적 사건에 수반을 통하여 의존하는 정신적 사건의 인과적 효력을 배제하는가 하는 점이다.

김재권은 정신적 사건을 의존적 중층 원인으로 간주하는 견해에 대하여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그것은 정신적 원인을 없어도 되는 것으로 만드는 듯하다”¹⁸⁾는 것이고, 둘째는 이 입장 역시 물리적 폐쇄성의 원리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제시된 김재권의 비판과 이에 대한 다른 철학자들의 대응을 살펴보고, 김재권의 비판을 더욱 강력한 형태로 재해석 내지 발전시키고자 한다. 첫째 비판부터 살펴보자. 중층 원인으로서의 정신적 원인이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것이라는 비판은 그가 제시한 인과적 배제 원리를 재기술한 것과 다름 없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인과적 배제 원리는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힘의 유무와 관련된 존재론적인 주장인 반면, 위의 첫번째 비판은 인과 관계로 파악되는 현상들을 설명하고자 할 때 정신적 속성에 인과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세계 이해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가와 관련된 인식론적인 또는 방법론적인 주장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 김재권의 논증은 “한 사건의 인과적 발생이 한 원인에 의하여 충

18) Kim (1998), 45.

분히 설명된다면, 다른 사건을 그를 위한 중층 원인으로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일종의 인식적, 방법론적인 규준으로부터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무력함이라는 존재론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위의 논증에 담겨진 방법론적인 규준은 실제로 발생하는 진정한 인과적 중층 결정의 경우까지도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 진정한 중층 결정의 경우에는 원인으로 추정된 두 사건이 독립적이기에 각자에 대하여 독립적인 인과적 힘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건이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론적인 규준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의존의 가장 강한 형태는 환원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원인으로 제시된 두 사건 사이에 환원의 관계가 성립한다면, 당연히 두 개의 원인을 가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고찰이 보여주는 것은 원인으로 추정된 두 사건이 독립적일수록 각자에 대하여 독자적인 인과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 반면, 양자가 의존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양자 모두에게 독자적 인과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고려가 물리적 사건에 의존하는 정신적 사건의 인과적 효력을 완전히 박탈할만한 힘을 갖지는 못하는 것 같다. 비록 정신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에 수반한다 할지라도, 정신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되지 않는 한 존재론적으로 잉여의 부분이 있을 것이고, 바로 이 부분이 결과로서의 물리적 사건을 야기하는 데에 추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잉여의 부분이 상정되지 않는다면, 정신적 사건은 그것이 수반하는 물리적 사건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할 뿐 아니라, 그것이 갖는 인과적 효력도 그 수반 기반이 되는 물리적 사건이 갖는 인과적 효력에 제한된다고 주장하는 셈이 되는데, 이 경우에 그러한 정신적 사건을 결과적인 물리적 사건의 중층 원인으로 제시하는 것은 실로 불필요한 추가로 보이고 앞서 제시한 방법론적인 규준이 상당한 위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 단계에 이르면, 증명의 부담은 정신적 사건의 인과적 효력을 옹호하는 사람에게 놓

이게 된다. 정신 인과를 옹호하는 많은 철학자들은 인과 관계를 반사실적 가정문을 통하여 이해함으로써 인과적 배제의 문제를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르포어Ernest LePore, 블록Ned Block, 베이커Lynne Baker, 호간Terence Horgan¹⁹⁾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과연 이러한 입장이 위에서 거론한 잉여의 부분을 메울 수 있을까? 김재권의 첫번째 비판과 관련된 논의를 이 정도에서 잠시 중단하고 김재권의 둘째 비판을 살펴보기로 하자.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의존 관계를 통한 분석이 김재권의 두번째 비판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현재 우리가 중단한 지점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사실적 의존 관계를 통한 인과의 분석에 따르면, M이 P의 원인이라고 함은 M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P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통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얼굴 찡그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통증이 얼굴 찡그림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 인과를 이렇게 반사실적 가정문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은 정신적 사건을 중층 원인으로 보는 것에 대한 김재권의 두번째 비판을 피해나가는 장점을 가진다. 정신 인과를 중층 원인으로 보는 것에 대한 김재권의 두번째 비판은 다음과 같다:

“...물리적 원인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의 세계와 최대한 유사한 세계를 고려하여 보라. 중층 결정의 접근법은 그런 세계에서 정신적 원인이 물리적 사건을 야기한다고, 즉 인과적 폐쇄의 원리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나는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최소한의 반사실적 가정은 세계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다.”²⁰⁾

정신 인과를 반사실적 가정문을 통하여 분석하는 철학자들은 이러한 비

19) Block (근간), LePore (근간), Baker (1993).

20) Kim (1998), 45.

판에 대하여 한 목소리로 대응한다.²¹⁾ 아무런 물리적 토대 없이 정신적 사건이 발생하는 세계는 수반의 성립하지 않는 세계이며, 이러한 세계는 M이 P에 수반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물리적 사건인 P'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세계에 비하여 우리 세계로부터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다. 따라서, 우리 세계에서 P가 M의 수반 토대라 할 때, M이 발생하면서 P가 발생하지 않는 세계로서 우리 세계와 가장 유사한 세계는 M이 아무런 물리적 수반 토대 없이 발생하는 세계가 아니라, M이 다른 물리적 사건 P'에 수반하는 세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에서 M에서 P*로의 인과는 P'에서 P*로의 인과를 동반하기 때문에 인과적 폐쇄의 원리를 위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의 대응은 인용문에 나타난 김재권의 비판에 대하여는 성공적인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다른 지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앞서 제기된 잉여의 문제를 더욱 첨예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위의 대응은 정신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분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M이 P*의 중층 원인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하여 P 이상의 또 다른 원인을 가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비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임을 시사한다: M은 다른 물리적 토대 P'에 의하여 실현되어 P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M이 갖는 인과적 효력은 P에 의하여 소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대답이라기 보다는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M이 P'에 의하여 실현되어 P*를 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중층 결정의 경우이며, 이에 대하여 또 다시 P*의 인과적 발생을 설명함에 있어 P'이외에 추가적으로 M을 가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에 부딪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유사한 대답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유사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어 이 과정은 무한히 반복될 것이다. 이러한 무한 후퇴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대응은 직관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100MHz 이상의 진동을 가진 소리는 물을 의미하는

21) Block (근간), LePore (근간), Crisp and Warfield (2001), 이선형 (2001).

언어가 있다고 하자. 이 언어의 한 사용자가 물에 대하여 120MHz의 파동으로 말하는 순간 앞에 있는 유리창이 깨졌다고 하자. 이 경우에 유리를 깨트린 원인은 소리가 물을 의미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 파동 때문인가? 그 원인이 파동임은 자명하다. 이 경우에 그 소리가 물에 관한 것 이면서 100MHz가 아니었더라면, 그것은 아마도 150MHz든 200MHz든 100MHz이상의 파동을 가진 소리이었을 것이고 여전히 그 소리에 의하여 유리창은 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최초의 소리가 물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인과적 효력을 부여하여 주는가? 당연히 아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적 사건이 여러 상이한 물리적 토대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으며, 따라서 특정한 물리적 토대에 의하여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토대에 의하여 동일한 유형의 정신적 사건이 발생했으리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정신적 사건에 대하여 인과적 효력을 부여하는 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신적 사건을 물리적 사건과 독립적인 것으로 가정하게 되면, 정신적 사건을 중층 원인으로 가정하는 것은 방법론적 규준을 만족하지만 인과적 폐쇄성의 원리를 위배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른 한편, 정신적 사건을 물리적 사건에 수반하는 것으로 가정하게 되면, 물리적 사건에 추가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 정신적 사건에 대하여 인과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방법론적인 규준을 어긴다. 이에 대하여 인과를 반사실적 가정문을 통하여 분석하고, 그를 통하여 물리적 토대만으로 망라되지 않는 인과적 측면을 제시하려 하는 시도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무한 후퇴이고 또한 이는 치명적인 반례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이선형 (2001), 심성 인과와 인과적 배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ker, Lynne Rudder (1993), Metaphysics and Mental Causation, in Heil and Mele eds., *Mental Causation*.
- Block, Ned (근간), *Do Causal Powers Drain Away?*.
- Chalmers, David (1996), *The Conscious Mi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risp, Tom and Warfield, Ted (2001), Kim's Master Argument, *Nous* 35: 304-316.
- Davidson, Donald (1970), *Mental Events*, 그의 책 *Essays on Actions and Events*(Oxford: Clarendon Press, 1980)에 재수록
- Davidson, Donald (1993), Thinking Causes, in John Heil and Alfred Mele eds., *Mental Causation* (Clarendon Press, Oxford).
- Dretske, Fred (1989), Reasons and Causes, *Philosophical Perspectives* 3 : 1-15.
- Fodor, Jerry (1989), Making Mind Matter More, *Philosophical Topics* 67: 59-79.
- Horgan, Terence (1989), Mental Quasation, *Philosophical Perspectives* 3: 47-76.
- Horgan, Terence (1997), Kim on Mental Causation and Causal Exclusion, *Philosophical Perspectives* 11.
- Jackson, Frank (1986), What Mary Didn't Know, *Journal of Philosophy* 83: 291-295.
- Jackson, Frank (1997) Finding the Mind in the Natural World in Block ed., *The Nature of Consciousness*(Cambridge: MIT Press).
- Kim, Jaegwon (1984), Epiphenomenal and Supervenient Causation,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9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57-270.

Kim, Jaegwon (1998), *Mind in a Physical World*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LePore, Ernest (근간), Review of *Mind in a Physical World*.

LePore, Ernest and Loewer, Larry (1987), *Mind Matters*, *Journal of Philosophy* 93: 630-642.

McLaughlin, Brian (1989), Type Epiphenomenalism, Type Dualism, and the Causal Priority of the Physical, *Philosophical Perspectives* 3: 109-135,

Sosa, David (1984), Mind-Body Interaction and Supervenient Causation,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9(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71-281.